

2. 建築法 施行令 一部 改正

昨年 8월 7일 있는 建築法 施行令의 大幅的인 改正 이후 그동안 規定 運營上 未備, 不合理했던 일부 條項이 整備, 補完되어 '84년 5월 7일자 대통령령 제 11422호로 공포되었다. 그 主要骨子를 살펴보면,

가. 같은 建築物안에는 일정한 用途의 建築物끼리는 함께 設置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都心地 再開發事業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1983년 12월 31日 現在 商業地域으로서 宿泊施設・慰樂施設 또는 公演場중 하나 이상이 混在되어 있는 地域에서 都心地再開發事業의 施行으로 建築하는 建築物에 있어서는 그 出入口를 서로 각각 分離하여 設置하고, 그 主要構造部를 耐火構造로 하며, 避難施設 및 建築設備등을 設置할 때에는 住宅등과 宿泊施設등을 함께 設置할 수 있도록 함(令 第 35條 但書).

나. 종전에는 3層이상의 層으로서 公演場의 用途에 사용되는 層에만 屋外避難階段을 設置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層이상의 層으로서 바닥面積의 合計가 1千제곱미터 이상인 集會場 및 바닥面積의 合計가 660제곱미터 이상인 舞蹈遊興飲食店에도 屋外避難階段을 設置하도록 함(令 第 40條).

다. 公共業務施設 및 學校나 乘降機를 設置하여야 하는 建築物에는 身體障礙者の 出入 및 避難에 용이하도록 傾斜路를 設置하도록 함(令 第 43條 第 5項).

라. 地上層의 바닥面積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建築物에는 地下層을 設置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히 首都圈地域안의 建築物의 경우에는 地上層의 바닥面積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地下層을 設置하도록 함(令 第 47條 第 1項).

마. 延面積 5千제곱미터 이상인 建築物에 設置하는 非常給水設備은 일정한 基準에 따르도록 함(令 第 55條 第 2).

바. 建築物에 사용하는 建築材料의 品質을 향상시켜 建築物의 質을 높이기 위한 措置로서 일정한 建築材料는 韓國工業規格表示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建築材料를 종전의 27種에서 65種으로 넓힌 것(令 別表 10)으로 되어 있다. 이하 改正 全文을 掲載한다.

건축법시행령증개정령

제 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5조(방화등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같은 건축물안에는 주택·기숙사·노유자시설이나 의료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 중 하나이상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하나이상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구역(1983년 12월 31일 현재 상업지역으로서 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공연장중 하나 이상이 있는 구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 동사업의 시행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출입구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고,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며,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시설 및 건축설비등의 시설을 할 때에는 주택등과 동재개발구역안에 있는 기존의 숙박시설·위락시설이나 공연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제 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0조(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층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1. 공연장
- 2.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 3. 바다면적의 합계가 660 제곱미터이상인 무도유흥음식점

제 43 조에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공업무시설 및 학교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외부에 이르는 통로는 제 22 조제 1 항 각호 및 제 2 항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경사로로 하여야 한다.

제 47 조제 1 항중 “200 제곱미터이상인 때”를 “200 제곱미터이상인 때(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8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로 한다.

제 5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2 조(소화설비) 건축물에는 소화설비(소방법시행령 제 13 조제 1 항의 소화설비를 말한다)를 소방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 55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5 조의 2 (비상급수설비의 설치) 법 제 2 조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중 급수설비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쓰레기오물처리장·묘지관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과 제 102 조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비상급수설비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건물의 경우로서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7 조(비상조명장치) 건축물에는 비상조명장치로서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소방법시행령 제 13 조 제 3 항제 2 호의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말한다)를 소방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 92 조제 1 항 본문중 “건축선”을 “건축선(제 2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3면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도로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측의 각 건축선을 말한다)”로 한다.

제 99 조제 3 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이 법·이 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가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의 범위안에서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별표 2] 중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연구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별표 3] 중 제 17 항 내지 제 22 항을 제 19 항 내지 제 24 항으로 하고, 제 2 항 내지 제 16 항을 제 3 항 내지 제 17 항으로 하며, 동표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 2 항 및 제 18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단독주택

②연립주택·기숙사(시장·군수가 녹지보존을 위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연립주택·기숙사에 한한다).

⑬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계강습소에 한한다).

[별표 5] 중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설강습소(전자계산·전자 및 통신계 강습소와 산업용용계강습소중 나전칠기·공예·사진·종묘·도화·편물·자수·주조조판기·미용·이용 및 조리틀 교습하는 강습소를 제외한다)

[별표 7] 중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장(자동차정비사업장,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제업·연탄제조업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공장과 전체사용 동력이 20 마력이하인 인쇄공장을 제외한다)

[별표 8] 중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교육연구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것 및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와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제외한다)

[별표 9] 중 제 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으로서 사용연료량의 구분에 따른 1종 내지 4종(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안의 공장인 경우에는 1종 내지 3종)의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

[별표 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재료의 품질구분표 (제 25 조 관련)

구 분	품 명	구 분	품 명
1.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하는 건축재료(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포틀랜드시멘트		16. 배수용주철관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18. 수도용경질염화비닐관
	4. 보통합판		19. 수도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5. 수도용아연도강판		20. 난방용주철방열기
	6. 인입용비닐절연전선		21. 난방용강판방열기
	7. 옥내용소형스위치류		22. 난방용방열기부속품
	8. 배선용꽃음접속기		23. 경질비닐전선관
	9. 도어클로저		24. 강제전선관
	10. 원통형 및 상자형도어록		25. 원심력철근콘크리트말뚝
	11. 수도꼭지		26.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피씨말뚝
	12. 청동 5킬로그램 / 제곱센티미터 나사식게이트밸브		27. 도자기질타일
	13. 복층유리		28. 나사식 가단주철제 판이음쇠
	14. 보주정첩		29. 600볼트 비닐절연전선
	15. 배관용탄소강판		

구 분	품 명	구 분	품 명
	30.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50. 아연말 프라이머
	31. 와이어로프		51. 투명락카
	32.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 강판		52. 우드실러
	33. 냉간압연스테인레스강판		53. 광명 단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34. 냉간압연스테인레스강대		54. 알키드수지 바니쉬
	35. 수도용원심력사형주철관		55. 스파바니쉬
	36. 수도용주철이형관		56. 슬레이트 및 기와용페인트
	37. 연강용피복아아크용접봉		57.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광택에나멜
	38. 플로어링보오드		58. 백열전구(일반조명용)
	39. 석고패널		59. 형광램프(일반조명용)
	40.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		60.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
	41. 경질염화비닐골판		61. 형광램프안정기
	42. 비닐석면타일		62. 소 켓
	43. 발포폴리스틸렌 보온재		63. 가정용소형전압조정기
	44. 합성수지 에멀전페인트(외부용)	2. 건설부장관이 인정하여야 하는 건축재료	64.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45. 광명 단조합페인트		65. 강화유리
	46. 조합페인트		1. 보통벽돌(소성벽돌)
	47. 조합페인트 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2. 시멘트벽돌
	48. 합성수지 에멀전페인트(내부용)		3. 시멘트블록
	49.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4. 시멘트기와
			5. 슬레이트기와

[부 표] 제 4 항제 8 호 및 제 9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원·당구장·청소년전자유기장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제곱미터미만인 것.

9. 사진관·표구점·예능계 강습소·기술계 강습소(사무관리분야에 한한다)·독서실·장의사·동물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 표] 제 9 항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설 강습소(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계 강습소·무도교습소를 제외한다).

[부 표] 제 12 항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자동차여행자호텔·청소년호텔·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

[부 표] 제 13 항제 1 호 및 제 2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 시장법에 의한 일반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경매장·공판장 기타 이

와 유사한 것.

[부 표] 제 14 항제 1 호 및 제 2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간이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 무도유흥음식점(무도장·무도교습소·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부 표] 제 22 항에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물검역소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新 製 品 紹 介

— 垂直降下式 救助袋 —

美國 Goldwell Enterprises 社에서 만든 避難器具로서 從來의 斜降式 救助袋와는 달리 垂直降下式이라는 特徵을 갖고 있다. 商品名으로 “ZEC System”이라 부르고 있는 이 救助袋의 모양은 圓筒形으로서 特殊人造織物로 만들어져 있고 上下方向으로는 늘어나지 않으며 前後 左右로만 伸縮性을 갖고 있어 降下時 體重은 이 伸縮力에 의하여 支持된다.

降下速度는 使用者가 취하는 姿勢에 따라 臨意로 調整이 可能하며 體重이나 體形에 關係없이 一定한 速度로 降下할 수 있다.

本製品의 構成은 크게 Chute (Sleeve)와 支持物 두 가지로 構成되어 있다. Chute 는 1 m當 1 kg의 重量을 갖는 各各 다른 세 가지의 織物, 即 內管, 伸縮管, 外管으로 構成되어 있다. 內管은 安全係數가 5이고 支持強度가 鐵과 비슷한 42 kg/㎠의 纖維로 되어 있으며 시스템 全體를 支持한다. 또 內部表面은 부드러운 纖維로서 使用者의 미끄럼에 대하여 摩擦抵抗을 생기게 한다. 이때 摩擦熱은 매우 낮다. 內管의 크기는 圓둘레가 186 cm인 圓形 織物이고 접으면 幅이 93 cm 정도이다. 伸縮管(中間 彈力管)은 制動役割을 하고 높은 彈力回復率을 갖는 伸縮性이 높은 物質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 마찰력과 伸縮力을 利用하여 降下하는 사람은 손 발을 움직여 自己意思대로 速度를 調整하고 停止도 한다.

外管은 시스템 全體를 保護하며 섭씨 800 도의 高温에서 견딜 수 있는 유리 섬유로 만들어져 있고 內管과 中間伸縮管을 外部熱로부터 保護한다.

支持物에는 Casing, 금속 Ring 등이 있으며 Chute 를 支持하는 데 使用한다.

設置方式에 따라 單一入口式 (Single Entrance)과 複數入口式(Multiple Entrance) 두 가지가 있다. 單一入口式은 피난하여 들어갈 수 있는 入口가 하나인 것으로서 베라스, 발코니, 창문 등에 金屬製 支持裝置를 設置하는 方式을 말한다. 待避性能은 標準의으로 1분에 20名 程度이다. 또한